

[] 국내결혼중개업체

[] 국제결혼중개업체

공시

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공시기준일(전월말 현재) : 년 월 일 현재										
공시내용										
연번	상호명	대표자성명 (법인명)	신고일/등록일	소재지 (도로명주소)	전화번호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영업, 폐업, 휴업	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현황		
								처분일자	처분내용	비고

※ 처분내용은 “영업정지 ○월 ○일”, “과태료 금액 ○○원”으로 적습니다.